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67
----------	------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의자 : 윤준병 · 박민규 · 주철현
조계원 · 정동영 · 박홍배
이원택 · 박희승 · 이춘석
허영 · 김우영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 ·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

초 구입 주택,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④ (생 략)</p> <p>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u>2025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p>	<p>-----</p>
<p>하지 아니한다.</p>	<p><u>2030년</u>-----</p>
<p>⑥ (생 략)</p> <p>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p>	<p>-----.</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② · ③ (생 략)</p> <p>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1. ~ 3. (생 략)</p> <p>4.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p> <p>② · ③ (생 략)</p> <p>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p> <p>-----</p> <p>-----</p> <p>-----2</p> <p><u>030년</u>-----</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2030년</u>-----</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p> <p>-----</p> <p>-----</p> <p>-----</p> <p>-----</p> <p>-----</p> <p>-----</p> <p>-----</p>
--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⑤ (생 략)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30년-----

을 공제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